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개발

(주)스마트뱅킹



(주)스마트뱅킹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업무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와 분기별 임금지급조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에 대해 알아본다.

2007년 세법 개정 내용 중 건설업체가 유의할 사항

건설업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세제다. 이 법에 의해 모든 사업자는 일용근무자에게 임금지급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이런 의무를 실무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임금지급 시점에 일용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국세청은 건설업을 이 제도의 중점 추진대상으로 선정,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건설업체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제도가 의무화돼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고 모든 사업 관련 수입·지출을 이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제도에 따라 5만원 이상 지출은 통장을 통해 처리하게 돼있어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다.

건설업 특성상 사업관련 지출을 통장을 통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지출을 은행이나 자동화 코너를 방문해 처리한다거나, 인터넷·텔레뱅킹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안 할 수도

일용근로자소득 지급조서 제출

1. 제도신설 배경 : 2006년부터 저 소득 근로계층의 원활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제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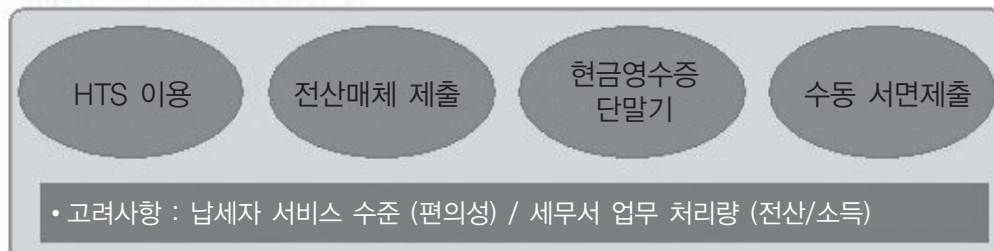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1~3월 지분 분(1/4분기) : 4월 말까지 제출 / 4~6월 지급 분(2/4분기) : 7월 말까지 제출
- 7~9월 지급 분(3/4분기) : 9월 말까지 제출 / 10~12월 지급 분 (4/4분기) :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제출

3. 미제출 가산세 : 2006년도에는 홍보 목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미부과

-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단,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4.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방법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경위

없다는 것이다. 세무적인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원터치 콜 기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통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스마트뱅킹 개인용 금융단말기 장점

스마트뱅킹은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사업용계좌제도를 윈스톱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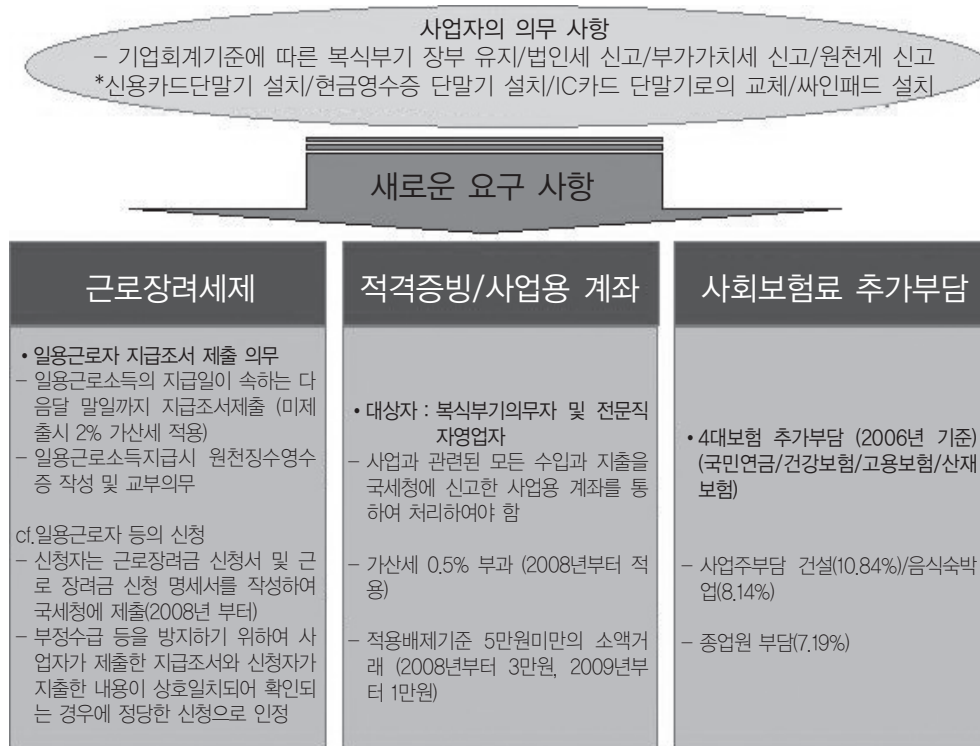
건설사업자는 개인용 금융단말기를 이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 지급정보를 신한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계좌나 적격증빙 요구사항을 휴대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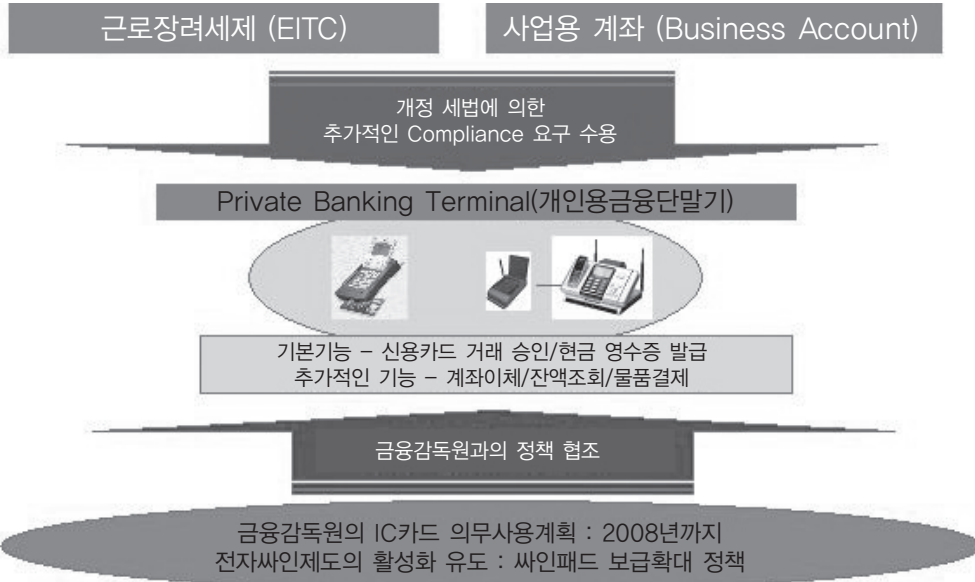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및 부담요금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 통장을 개설하고 관련 창구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스마트뱅킹에 SKT 이용신청을 접수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SKT 이동통신 사용료 및 은행계좌이체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동통신료는 18개월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매월 3만원이며 18개월 이후 1만 1천원이다. 추가비용은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 Private Banking Terminal의 장점

구 분	내 용	비 고
HTS를 이용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S 가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방문)이용신청서 제출)접속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작성/제출 또는 파일 변환 전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건설업체의 지급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 지급 -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별도의 지급조서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필요성 대두 전문건설사 또는 개인건설업의 지급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서 현금 지급 -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및 교부가 곤란한 환경 & 지급조서 작성의 위하여 주민#메모 필요성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D 또는 카트리지 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 프로그램)전산매체 제출 요령 및 오류검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 근로자 급여카드 발급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gma 효과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이 없는 임용근로자와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상시근로자 전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key메뉴 중 지출 증빙 선택,카드 Swiping/ 10또는 30입력/지급액 수동입력) 자동전송 - 별도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작성 및 제출 & 접수 업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및 세무서의 방대한 업무량
수동 서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다운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작성 및 제출 & 접수 업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및 세무서의 방대한 업무량

▲ 지급방법 비교